#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21

발의연월일: 2024. 7. 24.

발 의 자:이수진・이기헌・문진석

민병덕 · 송옥주 · 민형배

송재봉 · 서미화 · 전용기

박홍근 의원(10인)

## 제안이유

최근 화학물질의 증가와 함께 국민건강과 안전, 환경에 대한 유해성 방지를 위하여 체계적인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그런데 협회는 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판매 등에 관한 영업을 하는 사업자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 관리에 필요한 공공업무를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어 이해충돌 우려와 공정성 및 책임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이에 한국화학물질관리원에 대한 설립 근거 및 업무 수행에 대한 관리·감독 등의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한국화학물질관리원을 통하여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공공업무를 수행하게 하도록 하여 보다 효율적 이고 체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화학물질관리원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53조제 1항).
- 나. 한국화학물질관리원의 업무를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화학물질 관리제도 등에 관한 교육·홍보,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 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 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서 위탁하는 업무, 환경부장관이 화 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위탁하는 업무 및 그 밖에 관리원의 목 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업무로 함(안 제53조제4항).
- 다.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화학물질관리원 에 대하여 관리 및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3조제5항).

#### 법률 제 호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화학물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한국화학물질관리원의 설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화학 물질관리원(이하 "화학물질관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화학물질관리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 화학물질관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화학물질관리원은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조사 연구
- 2. 화학물질 관리제도 등에 관한 교육ㆍ홍보
- 3.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적 · 재정적 · 기술적 지원
- 4.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화학물질관리원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
- 5. 환경부장관이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 6. 그 밖에 화학물질관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환경 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 ⑤ 화학물질관리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⑥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관리원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55조제2항 중 "협회"를 "화학물질관리원"으로 한다. 제56조 중 "협회"를 "화학물질관리원"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한국화학물질관리원의 설립준비) ① 이 법에 따른 한국화학물질 관리원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 ② 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협회(이하 "종전협회"라 한다)로 하여금 이 법에 따른 한국화학물질관리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 ③ 협회는 이 법에 따른 한국화학물질관리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3조(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협회는 총회의의 의결로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정관을 변경하여야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종전협회는 「민법」 제45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정관의 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정관의 변경허가 신청은 부칙 제2조에 따른 한국화학물질관리원의 정관인가 신청과 함께 하여야 한다.
- ④ 종전협회는 제2항에 따른 정관의 변경허가를 받은 때에는 재단법인으로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⑤ 종전의 제53조제1항의 업무 수행에 관한 종전협회의 권한과 그에 따른 의무 및 종전협회의 재산의 일부는 종전협회의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한국화학물질관리원의 설립등기일에 한국화학물질관리원이 승계한다.
- ⑥ 제5항에 따라 한국화학물질관리원이 승계할 재산의 가액은 한국 화학물질관리원의 설립등기일 전날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 ⑦ 종전의 제53조제1항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종전협회가 한 행위는 한국화학물질관리원이 한 행위로, 종전협회에 대하여 한 행위는 한국화학물질관리원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 중 "협회"를 "한국화학물질관리원"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협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에 따른 한국화학물질관리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신·구조문대비표

혀 행

개 정 안

제53조(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 ①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화학물질의 적정한 관리, 기술개발, 그 밖에 영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이하 "협회"라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③ 협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환 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 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① 환경부장관은 협회의 운영 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환경부장관은 협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 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

제53조(한국화학물질관리원의 설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화학물질관리원(이학 "화학물질관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화학물질관리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 화학물질관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화학물질관리원은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조사 • 연구
- 2. 화학물질 관리제도 등에 관 한 교육·홍보
- 3.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4.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 령에 따라 화학물질관리원이

다.

-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 인가를 받은 경우
- 2. 법령의 개정 등 사정이 변경 6. 그 밖에 화학물질관리원의 되어 협회의 설립목적 달성 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3. 제4항에 따른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 ⑥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한다.
- 제5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제5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생 략)
  - ②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환경 산업기술원법 | 에 따른 한국환 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 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협 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56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제56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55조제2항에 따라 위 의제) ------

수행할 수 있는 사업

- 5. 환경부장관이 화학물질 안전 관리를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 업
- ⑤ 화학물질관리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⑥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관 리원을 지도 · 감독할 수 있다.
- (현행과 같음)

(2)	- —
	· —
	-
	-
	-
	화
<u>학물질관리원</u>	-
_	

탁반은 업무를 하는 한국환경 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 <u>협</u> <u>회</u>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 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 다.

	 화학
물질관리원-	 